

의료법 제 17조 2항에 의하여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

대리 처방 안내

대리 처방이 가능한 요건

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 2 1. 환자의 거동이 **현저히** 곤란하고
2. **같은 질환**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3. 오랜 기간 **같은 처방**이 이루어지는 경우

●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.

대리 처방 가능 수령자

- ▶ 배우자 ▶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(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
- ▶ 직계혈족의 배우자 (자녀·손자의 배우자)
- ▶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(배우자의 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
- ▶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(노인복지법)

대리 처방 시 구비서류

- ▶ 대리처방확인서 (14세 미만 예외) ▶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
- ▶ 수령자의 신분증, 환자 신분증 및 사본 (17세 미만 예외)
- ▶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등

!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(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/보호자도 처벌됩니다.)